

수출입 정보

2019.04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02. 수출입물류 동향

- 관세청, 밀착 수출 지원으로 얼어붙은 수출시장 불 지핀다
- 中 대외개방 확대로 늘어난 수출 기회 자생력 높여 경쟁해야
- 우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77개'

03. FTA 동향

- 中, 3월 25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발행

04. 최신 품목분류

- 관세율표상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 여부의 판단 사례
- 영문이 국문보다 우선하는 HSK 용어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5호, 2019. 3. 15.>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3호(2018. 11. 16.)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1. 16. ~ 2019. 3. 15.에서 2019. 3. 16. ~ 2019. 5. 15.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3.20>

○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105호, 2018.12.31. 공포, 2019. 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7호, 2019.2.12. 공포, 2019.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관세 등의 일괄납부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했던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요건 및 일괄납부의 제한 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21호, 2019.3.20>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
-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
-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함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함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
-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수출입물류 동향

“관세청, 밀착 수출 지원으로 얼어붙은 수출시장 불 지핀다”

“170여명 규모 ‘수출기업 지원팀’ 구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지원단 꾸려 수출 밀착 지원”

관세청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얼어붙은 수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밀착형 수출 지원에 나섰다. 단순 수출 지원을 넘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수출수요 파악, 시장정보 제공, 수출기업 매칭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3월 28일 전국 34개 세관 및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29개 지원팀, 170여명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지원팀’은 지자체 및 수출 지원 유관기관·단체 등과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과 이들 제품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지원단 합동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 지원단은 ▲기관별 지원정책 홍보, ▲국내외 전시회·설명회·간담회 개최, ▲기업별 1:1 수출 컨설팅,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정보와 수출기업 매칭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모든 지원정책을 망라해 최종적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연락처 】

본부 및 직할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9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2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02. 수출입물류 동향

“中 대외개방 확대로 늘어난 수출 기회자생력 높여 경쟁해야”

“무협,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 발표”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중국시장 활용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월 4일 발표한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 직구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방조치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다. 전체 품목의 38% (3,252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지난해 7월과 11월 인하됐고,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과 한·중FTA에 따른 협정 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철도·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금융·유통 등에 걸쳐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완전 개방하는 일정을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도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제수입박람회도 매년 개최하면서 바이어 수와 거래실적을 공개해 중국의 수입 실행능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한편 낮아진 중국 진출 문턱으로 외자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등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도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개방을 통한 중국경제 활성화가 제공하는 수출 확대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77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3년 연속 늘어나 77개를 기록해 세계 12위로 자리 잡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월 20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시장 1위 품목은 77개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1위 품목의 총 수출액은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했다. 1위 품목 중 화학제품(31개), 철강(13개), 섬유제품(8개)이 67.5%의 비중을 보였다.

1위 품목 77개 중 48개는 중국·일본·미국·독일이 바짝 뒤쫓고 있고, 16개는 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에 불과했다. 1위 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화학제품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2위 품목이 전년대비 각각 2개와 3개가 늘어 이들의 추격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1위 품목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화학 및 철강제품에서 선두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 가운데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이 1,720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693개)·미국(550개)·이탈리아(220개)·일본(171개)이 뒤를 이었다.

03. FTA 동향

“中, 3월 25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발행”

“신청인이 서명·인장 날인된 증명서 직접 인쇄 ... 기존 종이 발급도 병행”

<관세청,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동향 안내>

3월 25일부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전자적 발급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도 병행·유지한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은 중국 해관총서가 업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통관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자가인쇄 개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동향을 3월 25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해관총서는 3월 25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Paper C/O)는 발급기관이 서명·인장 날인해 교부하는 방식이었으나, 바뀐 전자 원산지증명서(e-C/O)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인장 날인된 포맷을 직접 인쇄하는 방식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원산지증명서 인쇄개혁 시범운영에 관한 공고」(2019년 해관총서 공고 제49호)에 따라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쇄 가능한 원산지증명서 종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재수출증명서, ▲가공증명서 등 15가지로 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e-C/O의 주요 특징을 안내하며,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서식과의 차이로 인한 진위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e-C/O는 ▲13번란(Exporter Declaration) 및 14번란(Certification)의 관인·서명이 인쇄된 상태이며, ▲원본을 복사(Copy)하는 경우 복사방지 코드가 표시되고, ▲우측 상단의 QR 코드 스캔 시 증명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린터 기종에 따라 음영색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위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웹사이트(www.origin.customs.gov.cn 또는 <http://check.ccpiteco.net>)에서 진위 여부를 조회하거나 담당자 문의를 통해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4. 최신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인스턴트 커피와 도자제 컵·컵받침을 하나로 소매용 포장한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트물품인가? 아닌가?”



<물품설명>

- 유리병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내용량 200g)와 장식이 있는 도자제 컵·컵받침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 인스턴트 커피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 건조한 커피다.
- 컵·컵받침은 도기제다.
- 결정세번 ‘인스턴트 커피’ : 제2101.11호
- 결정세번 ‘도자제 컵, 컵받침’ : 제6912호

○ 관세율표상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해당하는 호에 세트를 함께 분류한다.

○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뤄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으로 봐 분류한다.”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는지는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돼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돼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 세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한다. 그 중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항에 관한 것이다. “어떤 요구의 충족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어떤 요구의 충족이란 세트의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주된 물품)에 나머지 물품이 부가됨으로 인해 주된 물품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 효용성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 본 사례처럼 커피를 마시기 위한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컵’이 함께 조합됐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본 사례의 물품은 관세율표상 ‘소매용 세트’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관세기구(WCO) 각국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하는 HS 위원회에서는 본 사례의 물품에 대해 “어떤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구성 물품 간 상호 전속으로 귀속되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자제 컵은 커피음료뿐 아니라 다른 음료를 음용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기** **에 오로지 커피음료만 마시기 위한 물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HS 해설서에는 ‘소매용 세트’의 예로서 스파게티 면과 스파게티 소스를 설명했다. 이들은 구성요소가 스파게티 요리를 만들기 위한 구성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의 충족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세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04. 최신 품목분류

“영문이 국문보다 우선하는 HSK 용어”

“텀블러라 불리는 제품은 보온병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타의 보온기능이 있는 컵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물품설명>



- 물과 커피 등의 음료를 일정한 온도로 보존하기 위한 보온·보냉기능을 갖춘 물품으로 스트로우(빨대)가 사용 가능한 물품임(460ml).
-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내측바디와 외측바디의 이중 진공 보온방식으로 된 본체와 손잡이(HANDLED), 음용구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회전방식 일체형 뚜껑, 실리콘재질의 음용구 마개로 구성됨.
- 결정세번 : 제9617.00-1000호

- ‘보온병(Flasks)’으로 봐 제9617.00-1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 「HS 협약」에 따라 HSK는 호와 소호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해 사용해야 하며,
둘째 : 제9617.00-1000호의 영문명이 호의 용어와 같은 ‘Vacuum flasks’이므로 동 협약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바, Flasks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vessel과 같은 용기’로 정의하고 있음.

셋째 : 쟁점물품은 음료를 일정한 온도로 보존하기 위한 이중 진공 보온방식의 용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관세평가분류원은 워터보틀과 같은 보온병뿐만 아니라 텀블러와 텀블러형 머그컵 등을 일관성있게 제9617.00-1000호에 분류했다는 것이다.

※ 위 주장의 핵심은 HSK의 용어가 호의 용어를 그대로 규정하므로 한글명인 ‘보온병’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영문이 ‘Flask’의 정의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9617.00-9000(기타 진공용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 HSK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이므로 한글명인 보온병의 정의에 따라 분류해야 함.
둘째 : 쟁점물품의 형상과 특성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목과 아가리가 넓어지는 형상을 갖췄고, 보온병은 구조상 완전밀폐가 가능하며 장시간 온도유지 및 휴대시 누수에 의한 화상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머그잔의 용도로 제작돼 가방 등에 휴대 시 누수에 의한 위험이 있고, 텀블러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를 통컵으로 표현
셋째 : 텀블러는 내용물의 보관을 위한 목적의 용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 진공 보온방식의 컵에 해당하므로 제9617.00-9000(기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위 주장의 핵심은 HSK는 국문이 영문보다 우선하며 텀블러는 보온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 **국문의 보온병의 정의보다는 영문의 Vacuum Flask 를 우선으로 하여 제9617.00-1000호로 분류한다.**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